

| | |
|--------------|--------------------|
|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23. . . (제 회) |

| | |
|------|--|
| 의결사항 | |
|------|--|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 제출연월일 | 2023. 7. 4. |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4.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15. 6. 22.)에 따라 조례의 관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 용어가 개정되어 조례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해짐. 아울러 고성군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어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안 제4조)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내용 정비(안 제10조)

-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어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의 지원근거 신설

바. 조례의 내용 중 표기사항 일부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및 발전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복지지원과(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24302(2023. 6. 20.))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 -860호

가) 예고기간: 2023. 5. 22. ~ 2023. 6. 1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① “농어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②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③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⑤ “농어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

3. 자조(自助)·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농어촌 육성 및 발전, 농어촌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영세 또는 고령 농어업인,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3.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 소요되는”을 “한정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어업 진흥·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 농산물, 어업인, 어선, 농·수산업”을 “농어업인, 농수산물, 어선, 농어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기관·단체”를 “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를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인등”을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4조에 따라 수립·시행된 진흥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시행된 진흥계획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2조의2(정의) ① “농어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②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p>③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p> <p>④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p> <p>⑤ “농어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p> |

제3조(기본방향)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은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
3. 자조(自助)·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은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원칙) 군은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한다.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에

제4조(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농어촌 육성 및 발전, 농어촌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영세 또는 고령 농어업인,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대해서는 소득 보전 및 복지 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4.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군의 책무) ① 군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3.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삭 제>

제8조(지원범위) -----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2. (생략)
-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1. ~ 13. (생략)
- <신설>

14. (생략)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산물, 어업인, 어선, 농·수

----- 한정하여 필요한 -----

-----.

- 1.·2. (현행과 같음)
- 3. ----- 군수-----

제10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

-----.

- 1. ~ 13. (현행과 같음)
- 14.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어업 진흥·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
----- 농어업인, 농수산물, 어선, 농어업 -

산업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12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 ① (생략)

제14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등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제12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4조(지원신청) ① -----
----- 단체 -----

-----.

다만,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농어업인등 -----

-----.

④ (현행과 같음)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22, 152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11호 생략_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약칭: 수산업기본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6, 542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소비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8, 1519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8.>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